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글플레이스토이

애플앱스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기	 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	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9.27.(금)	2024.10.07.(월)	2024.10.08.(화)	2024.10.10.(목)	2024.10.17.(목)	2024.10.19.(토) ~ 2024.10.21.(월)	2024.10.28.(월) ~ 2024.10.30.(수)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u>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건경사력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여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 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aha-honorsvil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외체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로 인정하는 해외체류 예외규정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혼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C)		X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0.07.(월)	2024.10.08.(화)	2024.10.10.(목)	2024.10.17.(목)	2024.10.19.(토) ~ 2024.10.21.(월)	2024.10.28.(월) ~ 2024.10.30.(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 ■ (현장접수) 청약통장 7		■ (PC·모바일) 청약홈	■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견본주택 (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6-3)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담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총 189세대 중 다자녀 특별공급 38세대 (건설량의 10% 범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76세대(건설량의 20%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선별하고, 공급 금액(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 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정당계약일 계약자)에 한하여 공급되며, 이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84A	84B	84C	합계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세대	다자녀가구	18	18	2	38
	신혼부부	35	36	5	76
식당세네 	합 계	53	54	7	114

-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아이·맘부산플랜」대상 세대에서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따라 공급비율이 기존 9%에서 7%로 하향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세대는 각 타입별로 위와 같이 배정되며, 각 타입별 배정된 세대수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않습니다.
- 경쟁 발생 시 대상자 선정 방법(타입별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보다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
- ①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두 경쟁 발생 시 : 해당 유형 당첨자로 선정된 자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등 타 유형 특별공급의 접수 미달로 무작위 당첨된 경우 제외)
- ② 다자녀 특별공급 경쟁 발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달 시 : 타 유형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달 세대수만큼 추첨
- ③ 다자녀 특별공급 미달,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 발생 시 : 타 유형 접수 미달에 따라 무작위로 당첨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다자녀 특별공급 미달 세대수만큼 추첨
- 경쟁 발생 시 추첨 일정 안내
- ① 추첨일: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추첨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 일정을 개별 통보 후,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합니다. 단, 추첨 일정은 유선 및 문자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추첨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대상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인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수임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 미비시 추첨에 참석 불가합니다.
- 「아이·맘부산플랜」에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는 무관합니다.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과 - 43951호(2024.09.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8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6개동 총 380세대

[특별공급 189세대(기관추천 38세대, 다자녀가구 38세대, 신혼부부 76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2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7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ᄌᄄᆑ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세네필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666A	84A	84.9666	25.6509	110.6175	51.2262	161.8437	45.8110	175	18	18	35	5	12	88	87	10
2024000552	02	084.8452B	84B	84.8452	25.5124	110.3576	51.1530	161.5106	45.7455	179	18	18	36	5	12	89	90	11
2024000552	03	084.7879C	84C	84.7879	24.8218	109.6097	51.1185	160.7282	45.7146	26	2	2	5	1	2	12	14	2
		합 계								380	38	38	76	11	26	189	191	23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십시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최하층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급금액에는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대지지분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계약면적 등),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합 계
	장애인	4	4	-	8
	국가유공자	2	2	-	4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4	4	-	8
	중소기업근로자	8	8	2	18
	소계	18	18	2	38
다자녀가구	· 특별공급	18	18	2	38
신혼부부	특별공급	35	36	5	7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1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12	2	26
합 계	88	89	12	18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세대,원)

약식			공급금액			계약급	∃ (10%)			중도금	t (60%)			잔금(30%)
표기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8884		1차(5%)	2차(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선금(30%)
(타입)) '-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계약후30일이내	2025-02-27	2025-07-27	2025-12-27	2026-08-27	2027-01-27	2027-07-27	입주지정일
	1F	5	241,422,239	247,577,761	489,000,000	24,450,000	2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46,700,000
	2F	10	241,422,239	270,577,761	512,000,000	25,600,000	2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53,600,000
84A	3-4F	20	241,422,239	287,577,761	529,000,000	26,450,000	2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5-9F	50	241,422,239	298,577,761	540,000,000	27,000,000	2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10-20F	90	241,422,239	304,577,761	546,000,000	27,300,000	2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1F	5	241,077,056	232,922,944	474,000,000	23,700,000	2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2F	11	241,077,056	254,922,944	496,000,000	24,800,000	2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48,800,000
84B	3-4F	22	241,077,056	271,922,944	513,000,000	25,650,000	2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53,900,000
	5-9F	54	241,077,056	282,922,944	524,000,000	26,200,000	2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10-20F	87	241,077,056	287,922,944	529,000,000	26,450,000	2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2F	2	240,914,214	269,085,786	510,000,000	25,500,000	2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0.46	3-4F	4	240,914,214	286,085,786	527,000,000	26,350,000	2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58,100,000
84C	5-9F	10	240,914,214	297,085,786	538,000,000	26,900,000	2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10-19F	10	240,914,214	303,085,786	544,000,000	27,200,000	2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 2024.03.25. 시행된 「주택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	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mark>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mark> <mark>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mark>	·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S B M E M E C T A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x27;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4-2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베살하	중매급	^{-에 검} 기준 점수		<u> </u>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_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에 납누시포납등포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구한 기단을 단당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4-3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및「아이맘부산플랜」에 따른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7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Ⅰ・①소득구분 -	→ ②순위 -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척
	. \	7 (Z/II TI =	7 (3)/YI - 7		7 (3/——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비고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520	2.寸でを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당첨자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선정방법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_	3E 18 18E 1E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 □ 조태기 가	22				20		
	①무주택기간	32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 22		
	①무주택기간	32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20 22 24		
	①무주택기간	32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4 6 8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0 22 24 26		

			T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	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지	가저축 가입기간 점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신	·일을 기준으로 함			
	_		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		
	61.11.114 8tt, 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	자 및 그 배우자, 피	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	노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26세대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단, 본 주택은 60m²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본 주택에 청약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1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ᄎ처고그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3단세	추첨공급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エマナモ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성	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증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5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OHODIAA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1명	10	5명	30
(87687 66 714)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본인 17	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돈인 정악가짐 점우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부양가족의 인정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적용기준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하 규칙」 무주택기간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산정기준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일정 및 장소

구분	대상자		일시	신청장소		
청약신청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0.07.(월) 09:00~17:30 * 현장접수 : 당사 견본주택(10:00~14:00)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www.applyhome.co.kr 모바일: 청약홈 스마트폰앱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6-3 		
	01111 7 7	이바고그	일반공급	1순위	2024.10.08.(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www.applyhome.co.kr
	클린 중 대	2순위	2024.10.10.(목) 09:00~17:30	-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2024.10.17.(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등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취약계층으로서 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	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l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세대원의 청약지 - 세대원 등록방법	으는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나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님: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17.(목) ~ 2024.10.26(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0.1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안내

구분	제출기간	장 소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10.19.(토) ~ 2024.10.21.(월)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10:00 ~ 17:00 (3일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6-3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폐기처분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견본주택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	유형	해당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0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위임인(대리) 계약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공통서류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해외체류 관련 입증서류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 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I.	1	

			(재직증명서 포함)	만19세이상 세대원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아래 <표3>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부모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부양자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_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0		건강보험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자격득실확인서	만19세이상 세대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2> 참조
	0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표1> 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0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아래 <표3>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 조·비속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자격검증 서류제출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주택전시관에 비치
추가사항	0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0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모든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공개하여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 로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신규취업자 :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 계속근로자 :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④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③,④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등기소 ②,③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미가입자]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법인대표자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일용근로소득자	합 설 호 환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장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청 ※ 직안보인이 없거나 작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작자 ②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 원본 ※ 직안되었이 없거나 작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고무처법 소득명세표상 "주(면)" 충급이 금액을 제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이 합기자 작업날인 된 사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법 소득명세표상 "주(면)" 충급이 금액을 제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상기 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제출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주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사용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_{피스}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에서 해당화면 구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전체 화면 캡쳐) -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에서 해당화면 구현 필요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가액 판정 대상이 됩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4.10.28.(월) ~ 2024.10.30.(수) (3일간, 10:00~16:00)	사하 경남아너스빌 시그니처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6-3]	051) 292-0380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견본주택에서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302-642042	㈜티케이케미칼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ı	사업주체가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서류	
공통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0	계약금 입금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0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 분양계약자 부담분(7만5천원)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0	위임장	본인(청약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날인
	0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요)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 (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중도금무이자'** 조건은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 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 합산)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 제한 및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The Art of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보는 경우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않은 것으로**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 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10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금 액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입주 시	비고
84A	22,000,000	2,200,000	19,800,000	
84B	19,000,000	1,900,000	17,100,000	
84C	22,000,000	2,200,000	19,800,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발코니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건축법시행령」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발생 및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에는 철재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제공품목

구 분	내 용				
전타입 (84A, 84B, 84C)	현관	-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수동)			
	거실	- 우물천장			
	주방	-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냉장고장 - 아일랜드 하부장			
	드레스룸	- 도어 - 시스템가구			
	침실2,3	- 붙박이장 (총2개소)			
84A, 84B	현관창고	- 브론즈경도어 - 시스템가구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선택형	선택안	수량	설치 위치	공급금액	비고
					전 타입	
삼성전자	IOT 일반형 (공기청정 無)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5,300,000	
		선택2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또는 침실3	7,200,000	
		선택3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700,000	
	IOT 고급형 (공기청정 有)	선택1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또는 침실3	7,70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200,000	

(단위: 원, VAT포함)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연결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본공사 시 실외기실 면적이 변동 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다용도실)에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인테리어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공급금액		на
	16					84A	84B	84C	n1 Tr
	인테리어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중문(자동)		1,400,000	1,400,000	1,400,000	
	개별품목	거실/주방 /복도	바닥마감특화	- 이태리산 포세린타일		3,600,000	3,600,000	3,600,000	
	현관 /복도	벽체마감특화		선택1 (프리미엄주방 미선택시)	- 거실아트월/소파벽 이태리산 포세린타일 - 현관/복도/거실창호/주방벽 시트패널	3,500,000	2,550,000	2,350,000	선택2 중복선택불가
	/국도 /거실	극시	I미급극좌	선택2 (프리미엄주방 선택시)	- 거실아트월/소파벽 이태리산 포세린타일 - 현관/복도/거실창호벽 시트패널	3,300,000	84B 84C 비고 1,400,000 1,400,000 3,600,000 3,600,000 4택2		
마감재 및 가구	주방	프리미엄 주방		- 주방벽/상판 세라믹타일 - 프리미엄 씽크수전+와이드 사각씽크볼 - 다이닝장식장 (라인조명포함)		4,500,000	4,800,000	4,200,000	
	+1.414	침실1 수납강화		- 일반형 시스템가구(ㄱ자형) - 슬라이딩 도어 붙박이장		4,000,000		4,700,000	
	침실1	321	ТНОЯ	- 슬라이딩 도어 붙박이장			4,000,000		
	가족 /부부 욕실	프리미엄 욕실		- 벽체/바닥 포세린타일 - 프리미엄 세면기 - 프리미엄 욕실자재(수전, - 프리미엄 샤워부스(부부)/		2,800,000	2,800,000	2,800,000	
조명	거실	거실 조명특화		- 거실 우물천장 시트패널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등 - 거실아트월/소파벽/복도	등박스+픽쳐레일등	3,900,000	3,700,000	3,700,000	
	침실	침실 조명특화		- 침실1,2,3 프리미엄 직부	<u>=</u>	500,000	500,000	500,000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 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 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선택품목은 각 품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형이 상이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십시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가 진행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항목별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타일 및 석재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나누기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 선택 시 설치 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평면에 따라 가구길이 및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개폐 방향, 제조사,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마감특화 미선택 시에는 일반타일(800*400) 또는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차음,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 하시길 바랍니다.
- 현관 중문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시트패널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 선택 여부에 따라 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특성상 이음매 간격 및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주방 미선택 시 벽체 타일/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일반 씽크볼, 일반 씽크수전이 설치되며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수량, 위치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및 하드웨어, 악세서리는 제품 단종 등의 이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인조명이 적용되는 가구는 점검을 위한 안정기가 설치되어 일부 수납 영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는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는 과도한 무게로 인한 선반 휨,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미선택 시 일반등이 설치되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수량, 스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욕실 미 선택 시 일반타일, 기본형 위생도기, 기본형 수전, 기본형 악세사리, 일반형 샤워부스(부부) 및 욕조(가족)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개별기기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구분		품목	공급금액	비고
	下正		합국	전 타입	미포
냉장고 + 냉장고장	비스포크 패키지(삼성)		-냉장고장+냉장고4도어 1대+ 김치냉장고4도어 1대+키큰장(수입 하드웨어+라인조명)	7,200,000	
저기크타	하이브리드(삼성)	선택1	-하이브리드(2구 인덕션+1구 하이라이트)	560,000	
전기쿡탑	인덕션(LG)	선택2	-인덕션 3구	1,150,000	
저기이브	일반형(LG)	선택1	-일반형 전기오븐(38L)	530,000	
전기오븐	프리미엄형(삼성)	선택2	-프리미엄형 전기오븐(50L)	1,050,000	
식기	세척기(LG)		-12인용 식기세척기	1,200,000	
ا <u>ک</u>	마트주방TV		-13인치 스마트 주방 TV	350,000	
비데	일반형 비데	선택1	-가족/부부욕실 일반형비데	350,000	

(단위 : 원, VAT포함)

	도기일체형비데	선택2	-가족/부부욕실 도기일체형비데	1,900,000	
스마트복합환풍기			-가족/부부욕실 스마트복합환풍기	1,200,000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냉장고장은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일반 냉장고 설치 시 가구프레임보다 돌출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인덕션3구 및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 시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표면이 가구도어패널로 설치됩니다.
- 스마트주방TV는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10"형 주방TV가 제공됩니다.
- 각 형별 가전제품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단열,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단종 등의 이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복합환풍기 미선택시 배기휀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됩니다.

■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납부계좌

구분	납부 계좌			납부 일정		
↑ 世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잔금 (90%)	
발코니확장대금,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2-954397	㈜티케이케미칼	계약 시	입주지정일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관리계좌(모계좌)로 계약체결 시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세대별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 주체는 공급계약서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 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단지여건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 및 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세대별 공급금액이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부대시설 등의 시설을 구조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24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여부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 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용벽,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택법」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 평면도, 시방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입주자예정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증인 전 실시한 소음발생 예측결과는 기준치 이내에 결과가 나왔으나 입주 이후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입주자 측에서 도로관리청으로 소음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관련

주변환경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녹지 등) 및 이와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변경이나 인·허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 중 주차장은 단지내 시설이 아니므로 입주자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기부채납 예정으로 관리주체는 해당구청임을 안내하여 드리고, 현재 이미지 연출용이므로 향후 조경시설물, 바닥패턴,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변경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인근 도로정비사업 계획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관련	- 초등학교는 옥천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감천중·삼성중·장평중·동주여중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은 서부학교군 고등학교에 분산배치 가능하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서방향에 옥천초등학교 및 장평중학교가, 북동방향에는 혜성어린이집 위치하고 있어 학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인접시설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상가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향후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와 동측에 인접한 감천부영벽산파라빌아파트 구조물로 인해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여건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지구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건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관련법 등에 따라 실시한 소음발생 예측결과가 65데시벨 미만시에는 소음발생 예측결과와 입주 이후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인허가	-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변경(주택법 제15조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은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면적 증감에 대한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반증상태 및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서 세대가변성,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세대내부 가변성이 용이합니다. 계약(예정)자는 향후 리모델링 공사를 별도로 진행할 시 사업주체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일체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제시공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합니다.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지모형도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 철도,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우수선홈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에는 온도조절기 미설치), 콘센트, 스위치, 세대 내 등기구, 환기 디퓨져, 수전류, 수건걸이, 휴지걸이, 각종 점검구, 발코니수전, 그 외 악세사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주방TV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증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원 자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치구조 및 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아파트 지봉증 및 옥탑증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증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츄레이터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불가입 수 있습니다 단지 불가입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집 한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자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신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용벽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만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용벽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만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용벽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만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용벽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참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용병 등의 설치로 일부 세대의 경우 조라권 및 일조권이 참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제탁 내본가 보일 수 있는 이가 바라의 상보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장역 및 계약 전 설치위치(변경불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등이 노출되어 저충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소 및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등이 노출되어 저충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소 인근 세대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 휀룸,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동별 환기창이 설치되는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탑라이트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내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 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기계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2동, 103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232.84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 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출입구의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발전모듈,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중 광중계장치는 일부동(101동, 104동)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은 자연순응형 계획으로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보관소 등),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이 동마다 다릅니다.
- 지하주차장내 입주자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 개구부가 이동, 추가, 감소 등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우오수계획은 단차로 인해 일부 건물동 또는 지하주차장 외벽 등 인접하여 집수정, 맨홀, 관매설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현장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바닥패턴,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조명계획, 놀이터, 쉼터, 정원 및 식재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 상부에 도장 미 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경우 인증제품외 설치, 사용은 위법사항이므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각동 1층 또는 데크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레벨 차이로 인하여 단지 출입구에서 떨어진 동의 경우, 도보 및 차량 이동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불편함 등이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 및 지층성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용벽 및 사면에 인접한 동의 경우 주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단지내 건물동, 옹벽 등 단지외 벽산파라빌아파트 구조물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어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북서측 장평중학교 및 옥천초등학교 방향 옹벽, 서측 일반주거지역 옹벽, 북동측 벽산파라빌아파트 구조물)
필로티형 연결통로	- 일부동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연결통로 및 출입구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형 연결통로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형 연결통로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필로티형 연결통로 내부에는 각종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필로티형 연결통로 내부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결통로 입구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남동측 101동과 102동 사이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협의에 따른 출입구 폭 및 선형 변경시 문주규모, 형태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롱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한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한 유효천정고는 2.7m로 설계주차구간 2.1m이상)되었으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층별 유효천정고는 2.7m로 설계주차구간 2.1m이상)되었으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여건 및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동별 접근성 및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별 직접 접근하는 층수는 다릅니다.(2개층 : 101동, 103동, 104, 106동, 1개층 : 102동, 105동) -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모근 에라나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빚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력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추차장 출입력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수 계획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산정방식에 따라 층수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하추차장에 연결하여 외부계단 및 탑라이트가 설치예정이며 이에따른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탑라이트(천장)는 지하주차장의 자연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절대 상부에 올라가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입니다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피트니스 및 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실외), 다목적실, 육아공동시설, 맘스테이션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다목적실, 육아공동시설, 맘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복리시설 내 시설물 및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합니다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내 설치되는 상가용 한전 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빛공해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반	-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옹벽 계획은 사업승인도서기준 건축옹벽(H=9m~17m, L=80m), 역L형옹벽(H=2m~10m, L=81m), L형옹벽(H=1m~4m, L=36m)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단지내부, 단지외부 등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 높이, 길이, 폭, 형태(모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등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조경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면 조적 및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 또는 도장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101동	- 주동 지상 1층 어린이집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서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된 동 주 출입구를 통해 세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102동	- 주동 남서측에 맘스테이션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 6개 호실이 위치하여,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빛공해,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동 동측에 지하주차장 주 출입구가 위치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빛반사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동 동측에 문주 및 경비실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으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 인근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위치해 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동 북측에는 주민운동시설, 서측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1)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하3층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된 동 주 출입구를 통해 세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103동	- 주동 남측에는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1)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북측에는 어린이놀이터(2)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위치해 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된 동 주 출입구를 통해 세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104동	- 주동 하부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2)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없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접한 위치 : 103동 동 출입구 옆) -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된 동 주 출입구를 통해 세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105동	- 주동 하부에 지하저수조, 펌프실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위치해 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된 동 주 출입구를 통해 세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106동	- 주동 지하 1층에 부대복리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관리사무소, 육아공동시설)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남측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위치해 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계획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시각적 간섭 및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 불편 등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 지하3층 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된 동 주 출입구를 통해 세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삼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숙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육탑, 지층, 숙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제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중인세울, 권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 자재는 유사세성 및 무늬를 지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제 시공될 수 있으며 의정이 통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부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내 가구는 주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내 가구나 부 상세 및 규격, 치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건본구택과 상이함 수 있습니다 본공사시 기구의 내부 상세 및 규격, 치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건본구택과 상이함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기구의 내부 상세 및 규격, 치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건본구택과 상이함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을 지하는 보존 시작 기구의 내부 상세 및 구격, 지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건본구택과 상이함 수 있습니다 보험에 기본 천정교는 2.3m으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실 가구 무용은 기를 맞면들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태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역형의 기본 천정교는 2.3m으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관상용식을 사사, 빨래건조, 가능리 가동 등) 단열성을, 창호기일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중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함기 등의 예방조되를 취하여야 합니다 세대 내에 설치되는 하항식 피난구로 인해 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는 이름질 에어간 착용 시 화재가 발생함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부부는 화재의 위원이 있음으로 물건을 적제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실 부부는 화재의 위원이 있음으로 물건을 지대할 수 없습니다 한참시피난구는 해당관정의 정책 등 사장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 내실 박세대는 여건이 높이대, 옥의운동식원 커뮤니티 공건 등을 이용하는 집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을 발생, 서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실 박세대는 여건이 늘어로 용식운동식원 커뮤니티 공건 등을 이용하는 집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을 발생, 서생활 집에 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실 박세대는 여건이 늘어로 생용하는 것을 보면 이용하는 기관을 인하여 생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실 박세대는 여건이 늘어로 사용되었다면 가능 원래를 수 있습니다 단지 내일 박세대는 관련 사용을 이용하는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사용을 이용하는 가장과 인접한 자용 설계를 가장과 인접한 자용 실택을 수 있습니다 본지 보내 보내 세대는 연구 분에 대한 단열재의 위치의 무취 설계를 보면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결론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원래되지 않는 우 있습니다 본지선 설계를 수 있습니다 본지선 설계를 수 있습니다 본지선 설계를 수 있습니다 본지선 설계를 가장 설계를 하면 대한 부분을 이용하는 기관을 보면이 있을 수 있으니다 본지선 보내 전 및 부산 사용 기관을 받았다면 보다 보내 전 등에 생각하는 사용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받았다면 보다 가장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게 함께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는 기관을 가장하

단위세대 바닥, 벽, 천정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 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욕실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및 수량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 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 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류 등의 마감재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에 따라 자재 특성상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일 나누기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우수선홈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에는 온도조절기 미설치), 콘센트, 스위치, 세대 내 등기구, 환기 디퓨져, 수전류, 수건걸이, 휴지걸이, 각종 점검구, 발코니수전, 그 외 악세사리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단위세대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 간접조명의 설치 공간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현관 디딤판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은 외측 유색, 내측 백색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창호 (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외측) 22mm로이복층유리 (내측) 22mm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 내측은 22mm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은 22mm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예정입니다.(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선택시, 발코니 외측에 (외측) 22mm로이복층유리 (내측) 22mm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샷시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미확장시 발코니 확장 선택시와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발코니확장 - 발코니 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으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가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설치기준이 상이 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제공 혹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발코니 확장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발코니 비확장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발코니 비확장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 마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네트워크	-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이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계환기 설비	- 실외기실에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노출 설치됩니다. - 기계환기설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주택형 84A 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주택형 84A, 84B, 84C 타입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치수 및 마감재 색상, 설치 제품의 크기,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 84A 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84B, 84C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 84B 타입의 침실1 앞 발코니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향후 설치위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 분양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견본주택	공통사항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의 마감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에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마감재 리스트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본주택 VR 동명상은 건본주택을 활명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을 점약 및 계약 전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건본주택 II 배확장 발교니에 설치된 바닥마감재 및 가구, 소품등은 연출용으로 설치된 전시용 제품으로, 본공사시 제공되지 않으며 바닥배수구 및 단일막감(실외기살 바닥마감과 동일한 바닥타일)이 기본설치됩니다. 또한, 발교니는 단열 및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공간이며, 참실과 발교니 사이에는 본공사시 분양없어 설치됩니다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열,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지보수시 등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당자체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제품은 자재품열,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지보수시 등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당자체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복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전형, 필요한 전기 살이기가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계는 계약자의 이해를 들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전형, 필요한 전기, 살이기가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시 건본주택과 다소 성이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작재 전기가 및 스프링플라는 건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됩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회약하는 용량(규칙)의 가전제품(건지생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자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장 수 있으니, 반드시 결목주택에 설치된 가수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라지는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데라스 및 옥상조경 포함), 시설등(문구, 경비성) 동충입구, 옥상 및 옥탑부, 주자캠프지봉, 외부 계단실 및 외부 델리베이터, 탑라이트 지상 설기구(DA), 자전거보건소, 성혈패기품 보관시설, 조경시설품 등) 포장, 필로터 개구부 높이, 부대시설 및 근원성활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문주택에 설치된 전원이 심지되고, 동신 단자장은 현관장과에 설치되다면, 실계자가는 반경을 수 있습니다 전문주택에 설치된 전원이 심지되고, 동신 단자장은 현관장에 설치되다면, 실계자가는 반경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전원이 전원 시스템에어전은 주가선역품목(유상율신)이며, 장비사와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전체적 경으로 실계되고 소의되는 수에 시즌로 설계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문제대 중로개 방향의 우의 있는다. 우리 사무주택의 소리를 가용되는 위치 디자인 설계된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본인 의본으로 실계로 보다 의해 등의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문제대 경호기로 보안의 인하여 등 가 위한 것으로 실제 인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가선등 세점이 설계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문제대 중로개 방향은 주용점에 단구에 따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보다에 충호개로 보다 되는 보다 관계 변경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의 용지에 충호개로 보다 모래 변경을 보다 되면 설계 모형이 보다 관계 보다 보다 관계 보다 등의 의하여 설계 대한 보다 의상되고 있었다고 있었다면 그 문구택이 설계 본 모험이 상대되는 구성 상대 및 소문구역 보다 보다 생각을 다는 보다 보다 보다 있었다면 보다
	사이버 견본주택 유의사항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첫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관련 안내 및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12

-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주택법」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12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원가 상승,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주민운동시설(실외), 다목적실, 육아공동시설, 맘스테이션 등
- 단지내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 시설물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이며, 그 결과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기타공용시설(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면적은 각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전체 세대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용부분 관리비는 세대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됩니다.
-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시설은 대관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 시 각 동별로 계단실, E/V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와 동선의 편차가 있으므로 시설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동선 6m / 보조동선 6m	2.7m	2.7m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행통로의 높이는 2.7m입니다.(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동주택입니다.
- 내진 성능 관련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따라 내진능력 (진도MMI VII 0.20736q)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22024-101-0001800호	₩141,164,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구 분	적용여부	비고
고	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 용	1등급
창의 기밀	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 용	1등급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리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 i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 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 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 용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전기부문 설계기준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제7조 제2항 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 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감리회사	㈜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여명기술단	세영엔지니어링(주)	세영엔지니어링(주)
계약금액	1,354,129,700	607,614,000	73,260,000	52,91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법인명	㈜티케이케미칼	㈜티케이케미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침산동, 연우빌딩3층)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침산동, 연우빌딩3층)
법인등록번호 110111-3783457		110111-3783457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5 051)292-038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16-3	https://saha-honorsville.co.kr/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사업주체 분양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